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6. 9.(수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 자동차운영보협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은정, 사무관 박승민, 주무관 유태종 • ☎ (044) 201-3856, 3860, 3861	
보 도 일 시	2021년 6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(판스프링) ·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

- 언론보도 · 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...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, 17개 시·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.
 - 이에,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, 번호판 영치,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, 과태료부과,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.
 - 최근 5년간('15~'19년)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.1만 대로, 지난해는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(19.1%, 250,017대)하였으나,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(24.7%, 11,938대)하였다.

-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▲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(107천건) ▲무단방치 자동차 단속(53천건) ▲무등록 자동차(7.3천건) ▲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(12천건) ▲불법명의자동차(6.4천건)와 ▲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(64천건)한 자동차 등이다.



<화물차-적재함 판스프링 설치>



<화물차-후부 반사지 미부착>

<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>

구 분	'20년(A)	'19년(A)	증감(%)
번호판 영치실적(세금체납, 검사미필, 무보험, 운행정지명령 등)	106,980	167,465	▽36.1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53,003	51,776	2.4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34,668	30,428	13.9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29,719	30,929	▽3.9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11,938	9,577	24.7
무등록 자동차 단속	7,289	9,328	▽21.9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6,420	9,479	▽32.3
소 계	250,017	308,982	▽19.1

-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(6.14.~7.13.)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,

-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,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·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.



<이륜자동차-꺼기번호판>



<이륜자동차-번호판 부착위치 위반>

-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“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(www.ecar.go.kr → 민원신청 → 불법자동차신고)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박승민 사무관(044-201-38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무단방치 자동차

- 도로,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

□ 무등록 자동차 등

-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·변조 부착 자동차
-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

□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

-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

□ 타인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

-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·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

□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

-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,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
- *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(하차 확인장치 미비, 선풍기준 위반)단속 강화

□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

- 미신고,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
- *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·가림 단속 강화

□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

-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,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